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가단5429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무

피 고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석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F 사이의 2017. 3. 23.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를 91,417,01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3,860,757원 및 그 중 7,750,00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2,918,739원 및 그 중 8,400,000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38,394,708원 및 그 중 30,790,000원에 대하여, 원고 D에게 26,242,806원 및 그 중 18,500,000원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과 피고는 1984. 9. 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고, 2017. 3. 23.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F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F이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2017. 12.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760호).

○ 원고 C에 대한 사기

F은 2016. 11.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원고 C이 설립한 변호계에 가입하면서 계원을 모집해주는 대가로 계주에 이어 2번째로 계금 20,000,000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금융권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이 250,000,000원 이상이어서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중이라 위 변호계에 가입하여 수령한 계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뿐이었고,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F은 위와 같이 원고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C으로부터 2016. 12. 26. 경 F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계금 중 F의 미지급 계불입금 및 원고 C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79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원고 C으로부터 합계 10,790,000원을 편취하였다.

F은 2016. 3. 9. 당진시 H에 있는 원고 C이 운영하는 I미용실에서 원고 C에게 “미국에 있는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당진 시내에

있는 땅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F은 원고 C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F은 위와 같이 원고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C으로부터 2016. 3. 10.경 F 사용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F은 2016. 9.말경 I미용실에서 원고 C에게 “일본에 있는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10월 20일에 갯돈을 받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총 2,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F은 원고 C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F은 위와 같이 원고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C으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 원고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2. “원고 D은 피고에게 19,646,671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7가소5959, 6372(병합), 6587(병합), 6648(병합)]. 이에 대하여 원고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대전지방법원 2018나13828, 2019나1839(병합), 2019나1846(병합)]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 D이 F에게 2016. 4. 14. 1,000만 원, 2016. 12. 24. 8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라. 원고 B은 2018.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 F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9. “F은 원고 B에게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5. 18.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8차195호).

마. 원고 A는 2018. 4.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 F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9. “F은 원고 A에게 1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5. 18.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8차198호).

바. 한편, 피고는 아래와 같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등기일	등기원인
1	당진시 J 대 300㎡	2007. 4. 24.	2007. 4. 12. 매매
2	당진시 J에 있는 K건물	2007. 11. 20.	소유권보존등기
3	당진시 L 잡종지 660㎡	1997. 5. 8.	1997. 4. 24. 매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F은 2017. 3. 23.경 피고와 협의이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피고의 재산으로 하는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 합계 766,726,000원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557,600,000원을 공제한 순자산 가액은 209,126,000원이고, 위 가액 중 일반적인 재산분할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104,563,000원을 F에게 분할하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채권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2017. 3. 23. 피고와 F이 협의이혼을 할 당시 ‘F이 부부의 적극재산을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재산분할협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채무자인 F이 이혼한 후 피고와 구체적인 재산분할 협의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F이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희